##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586호

「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

#### 1. 개정이유

행복주택의 미임대 해소를 위해 완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입주하게 된 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# 2. 주요내용

행복주택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입주한 자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"일반"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고 부과기준 마련 (제9조)

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- 팩스 : 044-201-5531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전화 044-201-4513, 45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